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6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 송옥주・유동수・정춘숙

박찬대 • 박용진 • 안호영

김홍걸・박 정・서삼석

임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 등의교통약자(이하 "비휠체어 장애인"이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그 이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16조는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로 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식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상당수 교통약자가 그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종류(택시, 전세버스 등)와 그 이용대상 (비휠체어 장애인 등 포함)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16조제1항 및 제8항).

법률 제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심한 불편을"을 "불편을"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을 "운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 착한 차량
- 나.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 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제16조제1항 중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를 "제2조제8호가목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로,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을 "이상을"로, "한다"를 "하며, 제2조제8호나목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을 지정하여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8
<u>심한 불편을</u> 느끼는 교통약자	불편을
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운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차량을 말한다.	<u>하나에 해당하는</u>
<u><신 설></u>	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u> <신 설></u>	<u>나.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u>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u>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u>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u><신 설></u>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
	<u> 령령으로 정하는 차량</u>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u>이동에 심</u>	① <u>제2조제8</u>
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호가목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u></u>

령으로 정하는 대수 <u>이상의 특</u> <u>별교통수단을</u> 운행하여야 <u>한다</u>.

- ② ~ ⑦ (생 략)
- 8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 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신설>

<u>이상을</u>
<u>ठ</u> ोष,
제2조제8호나목의 특별교통수단
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대수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8
<u>대통령령으로</u>
<u>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u>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

다.